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0-103호
2020. 11. 13.(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 (2)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20-122호)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123호) 2

공 고 (3)

- 장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공고 제2020-1081호) 3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독촉) 고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공고 제2020-1086호) 5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1092호) 7

입법예고 (2)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1087호) 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1091호) · 17

공 람									
--------	--	--	--	--	--	--	--	--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전		후		비 고
		평면직각종형선좌표		평면직각종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2700	-	-	425037.81	237925.86	세계좌표
도근점	2701	-	-	425083.70	238054.37	세계좌표
도근점	2702	-	-	425126.99	238155.96	세계좌표
도근점	2703	-	-	425207.23	238207.68	세계좌표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26-123번지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20년 7월 15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지적과				
비 고		표지 재질(철재)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목상동 193-1	대덕대로1504번길 28	2020. 11. 13.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5,0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목상동 194-1	대덕대로1504번길 34	2020. 11. 13.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5,0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일동 1687-19	신일서로85번길 65	2020. 11. 13.	건물신축	신일서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8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장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명 : 장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693번지 일원(168필지 123,390㎡)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2020년 11월 13일~2020년 12월 13일)
4.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5. 사업기간 : 지구 지정고시일~2022년 12월
6. 사업예산 : 56,361천원
7.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가. 관계서류 : 지번별 조서 및 사업위치도

나.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

8. 의견제출방법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지적과(☎042-608-5313, 5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

나. 전화 : 042-608-5313, 5315

다. 팩스 : 042-608-3829

라. 우편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끝.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독촉) 고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3. 처분이유 : 2019년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	처분사유 (위반내용)	처분 내용
식품소분업	아이엔에스수산 주식회사	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118 (오정동)	2019년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5. 공고기간 : 2020. 11. 13.(금) ~ 11. 20.(금)

6. 고지사항

- 공고기간 내 대덕구청 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의 가산금 및 1.2%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증가산금(최고60개월)이 추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 ☎ 042-608-6963). 끝.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0. 11. 13. ~ 2020. 11. 27.(14일간)
 4. 기타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042-608-680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우편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진**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149번길 35, 4**호(용문동, 온누리빌)	47노****	2020.10.22 13:02:07	법동 191-1 부근	2020.11.03	2020.11.10	폐문부재
2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72, 5**동 19**호(죽동, 죽동천년나무)	대전80배*** *	2020.10.21 15:32:20	송촌동 461-1 부근	2020.11.03	2020.11.10	폐문부재
3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62, 1**동 16**호(와동, 현대아파트)	82주****	2020.10.22 12:50:08	와동 111 부근	2020.11.03	2020.11.10	폐문부재
4	성**	대전광역시 동구 충청로 5, *동 5**호(가양동, 조일아파트)	42나****	2020.10.22 13:02:23	법동 191-1 부근	2020.11.03	2020.11.06	폐문부재
5	문**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보안길 *	42소****	2020.10.23 09:08:10	덕암동 12-1 부근	2020.11.03	2020.11.04	폐문부재
6	김**	경상북도 경주시 능원길 22, 1**동 2**호(도지동, 코아루그랑블)	151가****	2020.10.25 21:52:23	상서동 373-21 부근	2020.11.03	2020.11.05	폐문부재
7	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152, 3**호(가오동, 대호하이츠)	85보****	2020.10.26 16:47:36	법동 191-1 부근	2020.11.03	2020.11.06	폐문부재
8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동 21**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48오****	2020.10.26 23:19:12	석봉동 770 부근	2020.11.03	2020.11.10	폐문부재
9	코리아**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목곡리 14*번지 *호	13호****	2020.10.28 10:10:21	법동 213 부근	2020.11.03	2020.11.04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현하며,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4조).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1인 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1인가구 지원 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새로운대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새로운대덕추진단(전화 : 042-608-6142, FAX :
042-608-3813, E-mail : bedoui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새로운대덕추진단 담당자 채혜영(전화 : 042-608-61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대덕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 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직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5급 1명, 행정·공업·농업·시설 5급 1명, 행정·농업·녹지·환경 5급 1명, 의료기술 8급 1명, 환경 9급 1명, 운전 9급 1명을 각각 감함(안 별표)

나. 일반직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5급 1명, 행정·공업·환경·시설 5급 2명, 환경 8급 1명, 보건·의료기술 8급 1명, 시설 9급 1명을 각각 증함(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042-608-6044, FAX: 042-608-3811, E-Mail: kdi041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권동일 (전화: 042 - 608-6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대전광역시대덕구기관별직급·직렬별지방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단위 : 명)

직급·직렬별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39	485	15	53	31	155
총괄	정무직		1	1				
	일반직		736	482	15	53	31	155
	별정직		2	2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36	482	15	53	31	155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4	3		1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45	25	3	4	1	12
	행정		10	8	2			
	의무		2			2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6	6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사서·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2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3					3
	행정·사회복지·간호·방송통신		1					1
	행정·사서·보건·시설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간호·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직급·직렬별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6급	소계		163	121	3	10	5	24
	행정		66	50	3		1	12
	세무		13	13				
	전산		2	2				
	사회복지		5	5				
	사서		3				3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보건		1	1				
	의료기술		1			1		
	간호		2			2		
	환경		2	2				
	시설		11	11				
	방송통신		1	1				
	운전		2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12(4)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3	3				
	행정·보건		4	3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8	8				
	농업·수의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2			2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환경·보건		1	1					
행정·시설·공업·녹지		1	1					
7급	소계		220	143	6	15	9	47
	행정		96	59	4	1	1	31
	세무		13	13				
	전산		3	3				
	사회복지		26	11				15
	사서		4				4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10	9			1	

직급·직렬별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7급	녹지		4	4				
	보건		8	5		3		
	의료기술		1			1		
	간호		6			6		
	환경		4	4				
	시설		18	18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간호조무		1			1		
	시설관리		1	1				
	운전		4	3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3				3	
	행정·공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8급	소계		216	137	3	19	11	46
	행정		70	37	2	1	2	28
	세무		13	13				
	전산		5	4			1	
	사회복지		35	18				17
	사서		4				4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6	5			1	
	농업		1	1				
	녹지		4	4				
	보건		6	3		3		
	의료기술		2			2		
	간호		11			11		
	환경		7	7				
	시설		20	19			1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1	1				

직급·직렬별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8급	운전		6	6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5	5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9급	소계		87	52	0	4	5	26
	행정		24	9		1	1	13
	세무		3	3				
	사회복지		22	13				9
	사서		1				1	
	공업		1	1				
	녹지		1	1				
	환경		1	1				
	시설		12	12				
	시설관리		1	1				
	운전		8	6		2		
	사무운영		7	1			2	4
	행정·사서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1			1		
별정직 계			2	2				
별정직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